

# 서 면 답 변 서

## ○ 김정태 의원

(질의요지)

### □ 2030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수립에 대하여

가. 지난해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위한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53지구이라는 다핵구조형 공간구조를 3핵(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3부핵-13거점-50지구로 개편하자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기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지 ?

나. 역세권지역에 대한 종상향은 부동산 투기, 자가상승, 고밀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현재 개편되는 내용 가운데 1996년 2011계획의 54지구나 2020계획의 53지구, 2030계획의 50지구와 같은 역세권 중심의 지역거점 공간 구조개편작업(용도지역 종상향)도 전면 재편하는 것인지 ?

(답 변)

### □ 2030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수립에 대하여

○ 기존의 2020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님.

○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글로벌 인프라확충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지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나,

- 2020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골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보완과정에서도 공간구조 개편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이번 기본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인문학적 가치 반영과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체계 정립, 실행전략 등을 구체화할 예정임

(’13년 6월 완료 예정).

- 지역·지구중심 등 중심지 체계는 도시의 전체적인 골격과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면적 개편은 지양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정하여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 예정이며,
- 용도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의 중심지 위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여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임.
-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안) 보완과 함께 「역세권 기능정립에 관한 연구용역」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중심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겠음.

(질의요지)

□ 용도지역 세분화와 준공업지역의 용도혼재 해결방안 관련

- 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현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향도 포함되는 것인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편의관점, 쾌적한 환경조성관점으로 개편되어야 함.
- 나. 현재 아파트단지는 준공업지역의 공업기능이 없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용도혼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적상의 준공업지역 총량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준공업지역 집중지역의 용도혼재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다. 준공업지역의 의미와 준공업지역 관리종합정책의 지속 유무는?

(답 변)

□ 용도지역 세분화와 준공업지역의 용도혼재 해결방안 관련

- 용도지역 전면개편 및 개념 재정립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전면 개편방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중심지체계에 의한 특화전략, 용도지역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관리방안 등 큰 틀의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 다만,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편의관점, 쾌적한 환경조성관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 및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준공업지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서울의 유일한 산업집적 공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총량관리 원칙의 지속적인 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수립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미래 복합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 방식을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 산업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향후에도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업시설을 유지하고, 일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음 .

(질의요지)

- 서울시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답 변)

- 서울시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 민주성 ·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 · 운영하는 제도임.
- 우리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만간(7월중) 운영예정인“정보소통광장”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위원회의 남설방지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신설 전·후 조직담당관에서 위원회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의 점검 뿐만 아니라 설치이후에도 위원회 정비기준을 통한 평가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질의요지)

- 서울시 지역거점도서관 정책의 백지화 문제 관련하여 서울시의 문화향유기회에 대한 지역간 격차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
  - 거점도서관 백지와 방안에 따른 도서관 정책
  - 서울시의 준공업지의 34.3%가 영등포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절대 부족 영등포구청에서 어렵게 설득하여 구청사 신축부지인 4천여평의 공공용지를 문화기반시설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지원방안

(답 변)

- 대형 단독 도서관 건립보다 구립공공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도서관 정책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10년부터 복합기능을 갖춘 중대형 시립 거점도서관 조성방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복합기능을 갖춘 구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거점도서관과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 문화관광부에서도 **대형 단독 도서관 건립을 지양하고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건물 형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권장**(12년 문화시설 사업 계획)하고 있으므로
  - 구립 공공도서관 및 우리동네 북카페 등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더 많이 확충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영등포구에 새로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은 영등포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해 올 경우 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사업구상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6
  - ※ 방림방적 공장부지로서 시가지 조성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부지임
- 부지면적 : 12,947.4㎡
- 계획규모 :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31,060㎡
  - ※ 도서관 11,650㎡/ 문화센터 3,884㎡/ 공연장 3,884㎡/ 스포츠센터 3,882㎡
- 총사업비 : 92,950백만원

- 공연장 : 1자치구당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영등포 아트홀 건립 (리모델링)시 보조금을 지원함

### 〈영등포 아트홀 지원 현황〉

- 위 치 : 영등포동 당산동 3가 3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9,246㎡
- 지원액 : 5,644백만원(시비)
- ※ '05 ~ '08년까지 지원

- 체육센터 : 1자치구당 2개소를 지원하는 바, 영등포구에는 이미 2개소가 지원됨

### 〈구립체육센터 지원현황〉

#### 1. 영등포 구립체육센터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26-3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9,131㎡
- 지원규모 : 6,232백만원(시비)
- ※ '02년도 ~ '04년도까지 지원완료

#### 2. 영등포 제2구립체육센터(현재 공사중)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6-1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7,257.6㎡
- 지원액 : 12,108백만원(국비 7,158, 시비 4,950)
- ※ '11년도 411백만원, '02년도 579백만원(예정), '13년이후 3,960백만원(예정)

- 도서관 건립 : 도서관 건립 면적에 한하여 국비 및 시비보조가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국비 : 건축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도서관(면적 11,650㎡) :  $34,860 \times 40\% = 13,944$ 백만원

- 시비 : 도서관에 해당되는 면적 최대 1,650㎡까지 지원(㎡당 1,815천원 기준),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를 적용(영등포 50%)

·  $1,650\text{㎡} \times 1,815\text{천원} \times 60\% \times 50\% = 898$ 백만원

(질의요지)

- 역사 발전은 인간의 의지가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을 주인을 모시겠다는 서울시 행정은 결국 저희 시의원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법의 맹점에서 비롯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문제는 법개정 이전에 행정재량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였다고 봅니다.

여전히 시민은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관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관행이 일시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혁신과 소통을 강조해주시시오.

(답 변)

-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신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면기준은 자치구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가설건축물에 관한 감면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주차장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치구에서는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구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감면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혁신 등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 도시정비 자문을 2년간씩이나 보류하고, 지연하고, 급기야 2년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분명한 서울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답 변)

- 영등포뉴타운은 '03.11.18 지구 지정되어 '04.12.30 뉴타운 개발기본 계획수립, '05.12.22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0.1.21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의제처리되었음.

-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09.3.6 영등포구청장이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구역 통폐합(26개지구 → 13구역),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및 층수, 주거비율, 주택공급계획 등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0.10.25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나,
- 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미흡하여 이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이며, 향후에는 적극적인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CNG버스 보조금 일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답 변)

- 천연가스(CNG)차량이 보급되기 시작한 '00년 당시 서울시 대기오염도가 미세먼지기준으로 연평균농도  $65\mu\text{g}/\text{m}^3$ 로 매우 높아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 그러나 CNG버스 차량가격이 경유버스보다 고가여서 보급 촉진을 위하여 차액에 대한 구입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00년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에 따라 꾸준히 경유 및 CNG 버스 모두 관련 기술이 향상되었으나, 현재까지도 CNG버스가 환경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음.
  - 현재 유로 5기준 적용 출시되는 CNG버스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아 출시되고 있으나, 경유버스는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지 못하였음.
- '15년에 CNG버스와 환경성이 대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 6기준 적용 클린 디젤버스가 출시되면 환경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CNG버스 보급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 경유·CNG버스의 환경성 비교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전세(관광)버스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입보조금지급에 따른 시재정 지출부담과 사후 안전관리 등을 종합고려하여 보조금지급을 중지하였음.
  - 현재 사업주가 연료비절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구매방식으로 보급정책 전환.